#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189 제출연월일: 2024. 6. 28.

제 출 자:정 부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호 중 "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"을 "제2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"로 한다.

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, "관리청"을 "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청"으로 한다.

① 제2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용품공급 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30조(벌칙)		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			
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			
벌금에 처한다.	<b>.</b>		
1. · 1의2. (생 략)	1.・1의2. (현행과 같음)		
2.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	2. <u>제26</u> 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		
<u>또는 신고를</u> 하지 아니하고	<u>등록을</u>		
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			
제34조(과태료) <u>&lt;신 설&gt;</u>	제34조(과태료) ① 제26조의3제1		
	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		
	<u>니하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자에</u>		
	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	
	<u>부과한다.</u>		
<u>①</u> (생 략)	<u>②</u> (현행 제1항과 같음)		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	③ 제1항 및 제2항		
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관</u>	<u></u> <u>ক্</u> যু		
<u>리청</u> 이 부과·징수한다.	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청		